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규정

□ 제정 : 2021. 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3조의 7에 따라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마이크로디그리”란 수요 지향 교육과 실전 체험 교육을 바탕으로 사회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최소 단위의 실무형 단기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과정) 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창업, 서비스러닝, 자기설계, 산학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전공) 또는 부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별지서식 1의 마이크로디그리 개설(신설/변경)신청서
2. 학과 교수 회의 또는 관련 위원회 자체 심의 결과가 기재된 회의록

③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8학점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의 과정별 명칭을 ‘마이크로디그리(과정명)’의 형식을 사용한다.

⑤ 부서에서 개설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유관학과를 지정하여, 유관학과 및 유관학과의 인접학과 학생이 수강하는 경우에는 전공일반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학생이 수강하는 경우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제4조(운영) ①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

② 마이크로디그리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한다.

③ 마이크로디그리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마이크로디그리 신청 자격은 재학기간 내에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이수 완료할 수 있는 재학생으로 한다.

⑤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과정별 이수인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2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학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주관 학과 또는 부서는 교육과정 종료 후, 해당 결과를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수 인정) 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이수 인정은 이수를 완료한 학기에 실시한다.

5-0-32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규정

②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이수를 완료한 학생에게 별지서식 3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단,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교과목이 해당 학과에 2/3 이상 개설된 경우 해당 학과의 학생에게는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을 수여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학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2]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신청서

학 과		학 번		
성 명		학년 / 반		
연 번	선택 과목명	학점	개설학기	개설학과/부서
신청학점 합계				
마이크로디그리명				

위와 같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과학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별지서식 3]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학칙 제23조 7에 의하여 _____ 분야에
특화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그 역량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
정하여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을 수여함.

년 월 일

수원과학대학교총장 ○ ○ ○ (직인)

마이크로디그리 등록번호 : 마이크로디그리명 - 연도 - 일련번호